

부천시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9. 4. 2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9. 4. 3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70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(1999. 4. 13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지역경제과장 정진환)

가. 제안이유

- 이 조례는 시에서 개설 운영하는 정기시장(5일장) 등의 관리를 위하여 제정되었던 조례이나 현재 운영 중인 정기시장이 없고 또한 지역여건상 앞으로도 시장개설 운영계획이 없을 뿐 아니라
- 시장을 개설 운영하더라도 국·공유재산관리에 관한규정에 의거 임대료 산정 및 관리를 할 수 있으므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

나. 주요골자

- “동조례 폐지”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음

나. 반대토론

- 없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-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부천시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

의안번호	제 126 호
의결년월일	99. 4. 15 (제70회)

제출년월일 : 1999. 4. 2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폐지이유

- 이 조례는 시에서 개설 운영하는 정기시장(5일장) 등의 관리를 위하여 제정되었던 조례이나 현재 운영 중인 정기시장이 없고 또한 지역여건상 앞으로도 시장개설 운영계획이 없을 뿐 아니라
- 시장을 개설운영하더라도 국·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임대료 산정 및 관리를 할 수 있으므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

주요골자

- “동조례 폐지”

관계법령발췌서

- 부천시시장사용조례 전문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

부천시시장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